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5
----------	------

2017년 4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4일, 최웅식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웅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변경
-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수수료 항목 신설  
(안 제5조제3호, 별표)
- 별지 서식 변경(제1호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 추가(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1호서식)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로 변경(전부개정 '16.1.27)하였음.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내용 중 “전기용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다만,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는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 및 내용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전기용품”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음.

2)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5조, 별표, 제1호서식)

- 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신설 '09.3.25<sup>1)</sup>)으로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sup>2)</sup>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안 제4조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확인 및 면제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호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이는 기존 안전인증<sup>3)</sup> 및 안전확인<sup>4)</sup>신고의 면제확인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3) “일괄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3조, 제5조)

- 현행 조례 제3조는 안전인증의 일괄면제확인, 제5조는 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에 관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1) 시행 '12.1.1

2)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3)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4)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

또한, 임의적인 조례 규정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일괄면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4) 별지 서식 축소(안 제1호서식)

-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은 제1호부터 제8호서식까지 8개의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 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신청서와 면제확인서를 공통서식 안 제1호서식과 같이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sup>5)</sup>하고 있는 바, 조례 별지 서식을 현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임(8개 서식 → 1개 공통서식<sup>6)</sup>).

#### 5) 기타 조례에 근거한 업무 수행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근거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는 등 해당 조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5) 신청인 면제확인(신청)서 3부 제출 → 확인 → 면제확인(신청)서 직인 날인하여 2부 신청인에게 발급

6)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제1호서식), 안전인증면제 확인서(제2호서식),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신청서(제3호서식),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제4호서식),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제5호서식),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제6호서식), 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제7호서식), 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제8호서식) ⇨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제1호서식)

# 관 계 법 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

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분	수수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2일 Handling Time : 2 Day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Notification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⑥ 원산지 (Origin)	⑦ 선적항 (Port of Loading)	⑧ 통관세관명 (Customs)	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⑩ 제품정격(Spec.)	
⑪ 분류/품목 (Category/Item)	⑫ 모델명 (Model name)	⑬ 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	⑭ 단가 (Unit Price)	⑮ 금액 (Amount)	
⑯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 수출용 원자재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					
⑰ (수출)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인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입 INVOICE 1부. ▶ PACKINGLIST 1부. ▶ 사진이 첨부된 한글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 1부.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표] 수수료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